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11. -----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11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27.(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○ 하단동 534-13번지에 위치하여 20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햇님어린이집을 당리동 309-5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 발생

나. 주요골자

○ 햇님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위치 변경 (안 제4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○ 햇님어린이집이 하단동 534-13번지에서 당리동 309-5번지로 신축이전함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각종 공부정리 등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, 특히 하단동 기존시설물에서 운영되어오던 위 햇님어린이집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어린이들에게 장기간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번 신축 이전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